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5. 11. 30.  
복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5.11.17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5.11.20.
- 다. 상정일자 : 제200회 정례회 제3차 위원회(2015.11.30.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복지행정과장 서 문 석

### 가. 제안이유

「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긴급복지지원법(2015.7.1.시행)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,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(안 제3조)

-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사유를 폭넓게 인정하여 긴급복지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

2)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4조)

-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「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함을 규정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○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2조 각 호 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조례안 제3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